

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8. 16(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8. 30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9. 2(금) 제17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운배)

-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(제1조)
 - 기존 수도법 규정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 및 공기업 운영의 적정관리를 도모
- 급수공사 승인에 관한 사항(제6조)
 - 급수공사 승인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제출과 특수 가압시설, 흡수정 등의 시설이 필요할 경우 이를 설치할 조건으로 급수공사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
- 기본요금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변경(제23조 별표1. 2)
 - 업종별로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체계로 조정
- 계량기 구경별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변경
- 사용수량의 인정에 관한 사항(제26조)
 -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

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m³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

○ 연체금 및 체납액 독촉에 관한 사항(제29조)

- 주민부담 해소와 체납액 조기납부 유도방안으로 체납액의 3/100⇒ 15/1,000로 조정
- 체납액의 12/1000에 해당하는 추가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및 종량제 요금체계를 도입하고자 평창군 수도급수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수도법, 지방자치법, 지방공기업법 등 근거법령을 새로이 규정 하였으며
 - 표준조례안에 따라 용어변경 및 상위법령에 부합된 조항을 신설 하였음
 - 특히, 업종별로 부과하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종량제 요금 체계로 조정하면서, 체납액에 대한 연체요율을 3/100에서 15/1,000로 하향하고 추가가산금을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따르면서
 - 요금체계를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업종 및 누진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
 - 요금체계 조정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회(2010.12.29)의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